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
직제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6. 9. 4. ~ 9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6년 9월 30일”을 “2028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6